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9일 포항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7.)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 가.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부서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조정 사항 반영 (안 별표 1 ~ 별표 2)
  - 소관부서 명칭 변경 : 경제노동과 → 경제노동정책과
  -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관리 사무 :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 관광진흥법 관련 신고 사무 : 컨벤션관광산업과 → 관광산업과
  - 어항 관리 사무 : 수산정책과 → 어촌활력과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무 : 해양항만과 → 항만과
- 위임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사무내용 및 근거법규 정비 (안 별표 1 ~ 별표 2)
  - 교통지원과 :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규모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 정비

##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및 위임사무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변경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해소를 통해 본청·구청·읍면동 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 5. 토론의 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